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504-0933502
신청일	2025-04-25 07:01:12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기준)에 대한 질문
내용	첨부파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복도 유효폭 산정을 위한 거실의 정의에 대한 질문.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4-0953680
접수일	2025-04-25 14:06:48
담당자(연락처)	권영신 (044-201-4838)
처리예정일	2025-05-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5-04-29 18:25:46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 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 복도의 유효너비 산정을 위한 탈의실, 휴게실, 계단실, 복도 등의 '거실'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양 옆에 거실이 있지 않는 기타의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은 1.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건물 내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칸막이된 하나의 단위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탈의실, 휴게실, 계단, 복도 등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시설의 복도 유효 너비 산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도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